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3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3. 14) 상정
-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3.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한 기 주)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2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239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천시 경리관이 위원장이 되며, 대학교수 등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2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위원회는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하고, 대상안건의 심의·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제출된 안건은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및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 위원이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정함.(안 제12조)
-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시의회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향은?</p>	<p>○ 표준안 시달에 따른 제정안인 바, 조례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할 것임.</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 음

나. 반대토론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483호
의결 년월일	2006. 3. 17 (제125회)

제출년월일 : 2006. 3. 8.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2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239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천시 경리관이 위원장이 되며, 대학교수 등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위원회는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하고, 대상안건의 심의·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제출된 안건은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및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 바. 위원이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정함.
(안 제12조)
- 아.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영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천시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

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이 30억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4.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의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토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

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위 원	수 당	70,000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전 문 가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수당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